

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」 및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·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대학교 연구장비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국민대학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동 사업의 위탁연구사업 예산에서 구입하는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·장비(이하 “연구 장비”라 한다)에 적용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구매비용 3천만 원 이상, 1억 원 미만의 연구 장비에 대한 구축 결정
2. 구축비용 1억 원 이상의 연구 장비 구축 타당성 검토 후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 또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에 상정
3. 3천만 원 이상의 공동활용대상 연구 장비 선정
4. 3천만 원 이상의 유희·저활용·불용장비에 대한 자산 이관 및 처리 사항
5. 연구 장비 변경 등에 대한 검토 및 결정
6. 연구 장비의 특성, 활용기간,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(구매/개발/임차) 검토 및 결정
7. 기타 연구 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공동실험기기센터 소장으로 하며,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~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 참여비율을 30% 내외로 할 수 있다.

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간사는 산학지원팀장으로 한다. <개정 2017.03.01.>

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2/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7조(장비심의) ①연구 장비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<별지 제1호 서식>에 의한 연구 장비 구축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②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, 자료 제출 및 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(기타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

정」, 「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 지침」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별지 제1호 서식>

연구장비구축심의요청서

■ 요청인 정보

부처명					
사업(연구명)					
주관연구 책임자	소속	성명	전화(내선)	핸드폰	e-mail

■ 연구장비구축 개요

1. 기본정보

장비명	한글				
	영문				
장비사양	모델				
	규격				
	제조국가				
장비기타정보	취득방법	주/부대장비	설치호실	취득금액(원)	
	내자 / 외자	주장비 / 부대장비			
장비특성 및 주요사양					

2. 장비운영 정보

운영비확보방안	
운영시 전문성	
운영전문가 확보 여부	

3. 장비도입 타당성

사업분야 타당성	
수요 및 파급효과	
유사동종장비 차별성	

4. 노후 대체장비의 경우 * 해당 시에만 작성

시기의 적절성	
기존장비의 활용실정	

■ 연구장비 활용계획서

공동활용여부		단독활용 사유	
장비용도	○시험용	○분석용	○교육용 ○계측용 ○생산용 ○기타
기본활용계획			
전문인력 양성계획			

■ 연구시설 장비 분류

6T 분류	
5대 중점투자분야	

위와 같이 연구장비구축 심의를 요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연구 책임자 :

(인)

<부록>

단독활용 사유

자체 수요가 많아 내부 활용도가 매우 높은 장비
시작품 시제품 수준으로 아직 시험운영 중
특수목적용 장비로써 반드시 자체 특화된 연구에 활용
상시 모니터링 및 계측용으로 실시간으로 활용되는 장비
국가안보, 기술유출 등으로 보안 및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장비
위험물질 취급 및 고 위험성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되는 장비
초고감도 정밀장비로 오염 및 손상 시 복구가 불가능한 장비
라이선스 계약에 묶여있어 타이용자가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

6T 분류

BT : 생명공학기술에 활용되는 연구시설·장비
CT : 문화콘텐츠기술에 활용되는 연구시설·장비
ET : 환경공학기술에 활용되는 연구시설·장비
IT : 정보기술에 활용되는 연구시설·장비
NT : 나노기술(초정밀기술)에 활용되는 연구시설·장비
ST : 우주항공기술에 활용되는 연구시설·장비

5대 중점 투자분야

기초과학·융합기술 연구개발활성화
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확보
글로벌 이슈대응 연구개발 추진
신산업 창출 핵심기술개발 강화
주력기간산업 기술 고도화